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1994. 6. 17
行政財務委員會

1. 審査經過

- 가. 提案日字 및 提案者: 1994年 3月 9日 區廳長提出
- 나. 回附日字: 1994年 3月 11日 回附
- 다. 上程日字: 第25回 永登浦區議會(臨時會)第1次 委員會(1994年 6月 15日) 上程議決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總務局長 尹鼎重)

가. 提案理由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 및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도모코자 함.

나. 主要骨子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
-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선정 및 추진 지원
-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 사업 실시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趙大顯)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서울시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안)대로 입안한 것으로 원안대로 제정하여도 무방하겠지만 본조례의 제정 근거가 1994. 2. 16일자 대통령령 제14166호로 제정 공포된 국무총리소속 하에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국제화추진위원회 규정을 근간으로 제정되는 조례이므로 본조례의 근간이 되는 국제화추진위원회 규정과 대비하여 살펴본 바 구청장이 입안 제출한 원안에 다음과 같이 일부 조문신설 및 내용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1) 「간사 및 서기」 조문 신설에 대하여 협의회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수적인 간사와 서기를 두는 것이 필요하고 국제화추진위원회 규정에서도 간사 조항을 명문화하였고 간사는 행정조정실 국제화추진 업무담당 심의관으로 하고 있어 우리구 협의회 간사도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정해 두거나 구청장이 지명하도록 본조례상에서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 원안 내용일부 수정에 대하여 원안 제19조(공청회 등 개최)를 (여론의 수집)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수정이유는 공청회 등 개최 표현은 여론수집의 수단적 표현이고 「여론의 수집」이란 표현이 포괄적 표현이라고 생각되며 본조례의 제정 근간이 되고 있는 대통령령인 국제화추진위원회 규정 제12조에서도 「여론의 수집」으로 표현되었기에 대통령령과 같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부칙 내용에 한시적 효력규정 명시 원안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2월 말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수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본조례 제정근거가 '94. 2. 16일자 대통령령 제14166호로 제정공포된 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을 근간으로 제정하는 것이므로 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 부칙과 같게 한시적인 효력규정을 명시하여 제정하는 것이 향후 새로 당해 조례의 폐지를 위한 조례 제정없이 기간경과로 자동폐지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修正案의 要旨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94년 6월 15일 행정재무위원회 한기태 위원외 1인
- 나. 수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도록 하며 부칙에 1996년 2월 말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하여 한시적 효력규정을 명시하여 자동 폐지하도록 하기 위함.

5. 審査結果: 수정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화추진협의
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

1994. 6. 15
발의자 : 韓箕泰委員外 1人

1. 수정이유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도록 하며 부칙에 1996년 2월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도록 명시하여 자동 폐지하도록 하기 위함.
2. 수정주요골자
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안 제3조)
나. 1996년 2월 말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안 부칙)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화추진협의
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안 제9조중(공청회 등 개최)를 (여론의 수집)으로 한다.
안 부칙중 "시행한다"를 "시행하되"로 하고 "1996년 2월 말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를 신설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신설)	제3조(구성)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제9조(공청회등 개최)	제9조(여론의 수집)	· 여론수집이 포괄적 표현임. ※공청회등 개최는 여론수집의 수단적인 표현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하되 1996년 2월 말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1994. 2. 16공포된 대통령령 제 14166호 국제화추진위원회 설치 부칙과 같게 수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의안 번호	216
----------	-----

제출년월일 : 1994. 3.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 및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도모코자 함.

2. 주요골자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
- 각분야별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선정 및 추진 지원
-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
-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

3. 참고사항

○ 근거 : 서울시 국제 04000-192('94.3.4)호와 관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제 1 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 2 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 3 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 4 조(회장과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조(기능)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 7 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8 조(자료의 제출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9 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4. 6. 17
行政財務委員會

1. 審査經過

- 가. 提案日字 및 提案者: 1994年 4月 26日 區廳長提出
- 나. 回附日字: 1994年 4月 29日 回附
- 다. 上程日字: 第25回 永登浦區議會(臨時會)第1次 委員會(1994年 6月 15日) 上程議決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總務局長 尹鼎重)

- 가. 提案理由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제4741호, 1994. 3. 16)에 따라 타집행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코자 함.
- 나. 主要骨子
○동장의 보직을 "5급상당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공무원"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변경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趙大顯)

- '94. 4. 29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개정코저하는 사안이 영등포구 동사무소 설치조례 제2조 제1항의 동장 임명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의 개정 내용에 따라 당연정비조치해야 될 사안이므로 구청장의 요청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4. 審査結果: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1
------	-----

제출년월일: 1994. 4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1. 改訂이유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제4741호, 1994. 3. 16)에 따라 타집행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코자 함.

2. 主要골자

○동장의 보직을 "5급상당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공무원"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변경

3. 改訂근거

○지방자치법 제109조

4. 조례(안): 별첨

5. 참고사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5급상당별정직 또는 일반직5급공무원"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3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 2 조(동장) ① 동사무소에 동장을 두되 동장은 5급상당별정직 또는 일반직5급공무원으로 보한다.	제 2 조(동장) ① 지방행정사무관.....